2007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	제.	출년	일일	:	200	08.	06.	
번호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200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현액 (A)	세입결산액 (B)	B/A (%)	세출결산액 (C)	C/A (%)	차인잔액 (D)=(B)-(C)	D/A (%)
계	255,050,669,000	823,496,753,517	833,926,982,065	101	629,268,300,562	76	204,658,681,503	25
일반 회계	202,155,949,000	756,984,524,567	766,613,167,208	101	589,430,864,338	78	177,182,302,870	23
특별 회계	52,894,720,000	66,512,228,950	67,313,814,857	101	39,837,436,224	60	27,476,378,633	41

나. 세입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B/A (%)	수 납 액 (C)	/C/A (%)	미수납액 (D)=(B)-(C)	D/A (%)
계	255,050,669,000	823,496,753,517	841,196,291,761	102	833,926,982,065	101	7,269,309,696	1
일반 회계	202,155,949,000	756,984,524,567	771,882,158,921	102	766,613,167,208	101	5,268,991,713	1
특별 회계	52,894,720,000	66,512,228,950	69,314,132,840	104	67,313,814,857	101	2,000,317,983	3

다. 세출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	이월액 (C)	C/A (%)	집행잔액 (D)	D/A (%)
계	255,050,669,000	823,496,753,517	629,268,300,562	76	172,205,582,670	21	22,022,870,285	3
일반회계	202,155,949,000	756,984,524,567	589,430,864,338	78	152,371,373,280	20	15,182,286,949	2
특별회계	52,894,720,000	66,512,228,950	39,837,436,224	60	19,834,209,390	30	6,840,583,336	10

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204,658,681,503	39,470,594,830	112,302,670,850	20,432,316,990	1,709,307,773	30,743,791,060
일반회계	177,182,302,870	33,465,889,280	112,302,670,850	6,602,813,150	1,699,210,113	23,111,719,477
특별회계	27,476,378,633	6,004,705,550	-	13,829,503,840	10,097,660	7,632,071,583

[※] 순세계잉여금=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보조금집행잔액

마. 회계별재무제표 총괄

(단위 : 원)

구분	재	정상태보고	서	재정운영보고서				
회계별	자 산	부 채	순자산	수 익	비용	운영차액		
일반회계(A)	1,793,199,060,861	14,747,841,961	1,778,451,218,900	209,884,702,077	146,150,406,544	63,734,295,533		
공기업특별회계(B)	52,236,306,100	4,687,356,578	47,548,949,522	4,038,700,944	6,042,226,159	△2,003,525,215		
기타특별회계(C)	133,850,616,686	667,150,233	133,183,466,453	29,757,633,569	11,869,685,997	17,887,947,572		
기 금(D)	3,203,855,576	0	3,203,855,576	708,100,361	403,632,910	304,467,451		
내부거래(E)	22,157,591,000	0	22,157,591,000	5,087,423,050	5,087,423,050	0		
합 계 (A+B+C+D-E)	1,960,332,248,223	20,102,348,772	1,940,229,899,451	239,301,713,901	159,378,528,560	79,923,185,34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나. 기타사항

-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붙임
-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